

國立公園의 文化的 利用

金憲奎

1976年 10月 31日 鷄龍山에서 開催된 第2次 國立公園大會에서 行한
講演要旨에 加筆한 것이다.

錦繡江山은 祖上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遺產입니다. 그 中에서도 代表的인 風景地를 國立公園으로 指定한 것은 國民의 福祉와 教育 및 休養을 위한 것입니다. 이 時間에는 國立公園의 文化的 利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國立公園은 教育的으로 利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여한 動機로 國立公園 大會에 參加했던지 여러분은 오늘 여러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식물과 동물을 관찰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大學生들이 여름放學 3個月동안 國立公園에서 臨時職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學點까지 준다고 합니다. 國立公園은 살아있는 博物館으로 보고 배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國立公園 管理當局으로서는 앞으로 國立公園을 教育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施設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國立公園의 藝術的 利用입니다. 國立公園은 아름다운 自然에서 오는 靈感의 源泉입니다. 韓龍雲 스님은 詩集 “님의 沈默”을 雪岳山 神興寺에서 썼다고 합니다.

國立公園의 風景을 그린 그림을 出品시켜서 美術展을 가진다던가 寫眞展을 開催하는 것도 藝術的 利用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國立公園 境內에 美術大學 分敎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建設部에서는 直營山莊을 짓고 作家들에게 健全한 作品을 著作할 수 있도록 便宜를 주는 計

劃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國立公園은 創意力 開發의 源泉으로 利用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슨」大統領은 自然美에 대한 教書를 議會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內容은 自然美에서 오는 靈感은 精神의 活力を 주기 때문에 自然美를 잘 保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創意力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自然美는 創意力 開發에 刺戟劑가 되는 것입니다. 1968年 12月 5日 朴大統領이 公布한 國民교육현장에도 창조란 날말이 두 번 創意란 날말이 한 번 나옵니다. 創意力 開發은 우리나라 教育의 指標입니다. 우리나라 教育도 언젠가는 創意力 開發教育으로 脱바꿈 할 때가 올 것으로 믿고 있지만 國立公園의 自然美를 잘 保存해서 오고 오는 青少年들에게 創意力 開發에 刺戟을 줘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國立公園은 公衆道德의 訓練場으로 利用해야 하겠습니다.

人間은 4分間만 呼吸을 못하면 죽는 存在라고 합니다. 그런데 呼吸에 必要한 酸素는 植物이 光合成作用의 副產物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植物을 꺾는 것은 酸素 製造工場을 破壞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國立公園 境內에서는 끊 한송이 나무가지 하나라도 꺾는 것을 禁止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自然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自然을 배우겠다는 思想이 몸에 배도록 훈련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國立公

園管理要員들도 끊임없이 教養을 쌓아야 하겠
다는 点입니다.

1975年 6月 5日 스웨덴의 首都 「스ток홀름」에서 開催되었던 人間環境會議에서 國立公園管理에 關한 情報交換의 重要性이 強調되어 決議案의 하나로 채택되었고 同年 9月 미국 「그랜드 테Ton」國立公園에서 開催되었던 第2次 世界國立公園大會에서도 이 點이 舉論되어 미국 内務省 國立公園管理處內에 訂正부를 두고 「캐나다」政
府의 國立公園局의 協助로 “公園”이란 季刊 雜

誌를 發行하기로 結論지었었습니다.

8個月의 준비끝에 지난 6月에 드디어 創刊號가 發刊되었고 9月에 2號가 나왔습니다. 創刊號에는 南美에서 「가라파고스」 國立公園과 아프리카의 國立公園에서 각各自己네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雜誌를 읽기도 하고 우리나라 國立公園 管理上 問題되는 點을 提起하고 世界의 權威者들의 解決策을 求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프린스 알버트 國立公園〉

〈59페이지에서 계속〉

은 이 法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다만, 觀光事業振興法 第15條 및 第39條 내지 第41條의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날까지 그 効力이 存續한다.

第3條 (許可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登錄 또는 承認을 받은 施行斡旋業者 및 觀光호텔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登錄 또는 承認을 받은 旅行斡旋業者 및 觀光宿泊業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觀光休養者 및 觀光土產品販賣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觀光客利用施設業者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된 韓國觀光協會 및 地域別 觀光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認可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試驗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通譯案內業試驗에 合格한 者와 觀光호텔從事員 銓衡 또는 試

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觀光從事員試驗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指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研修機關은 이 法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觀光地指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는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로 본다.